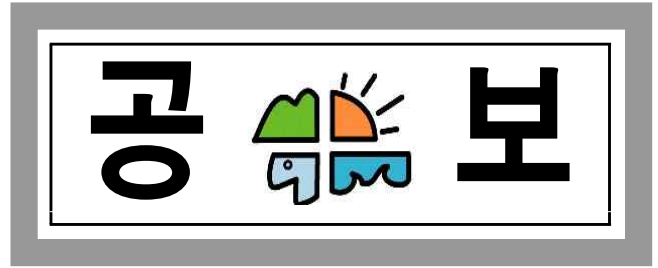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33호 2012년 11월 13일(화)

공 고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발생되어 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항시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할 수 있도록 보험 및 공제가입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안정된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개정함.
- 나. 보험·공제 등 적용대상 범위를 기존 주민등록·인감업무에서 본인 서명사실확인·여권발급·가족관계등록·지적관련 업무로 확대함(안 제3조)
- 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억이하에서 10억이하까지 각 업무별 보상한도를 구분하여 정함(안 제4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전화: 033-639-2720, FAX: 033-639-2385

E-mail: sunnam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정순남(전화 : 033-639-272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 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 3억이하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 10억이하
3. 주민등록 관련업무 : 2억이하
4. 여권발급 관련업무 : 1억이하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1억이하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이하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험가입 관리대장

[illegible]